용인 고림지구 2차 **양우내안愛 아파트** 입주자 모집공고

※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아속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①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.09.02.(화) 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주택보유 등의 청약자격은 공고일 기준)

② 이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(국토부 령) 개정(2025.10.30.) 적용되었으, 이에의 시행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- 청약순위 제1순위 간소화 및 청약횟수 완화(2순위 폐지) 기존 7.2.순위에 밟아오던 기존 '2년 납입' → '1년 1회 납입 이상' 으로 완화 (2순위 2년 납입은 유지)
- 인정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주택 세대주만 인정되던 기준이 기존 '무주택 세대주'만 인정되던 것에 '무주택 세대주'상태가 경과해도 신청 가능(세대원에 청약한 청약자는 가능)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.
- 인주자에는 해외체류 변경 기간 등, 제한 완화 : 해외체류 이후에 청약신청 가능 기간 : 국내거주변경 기간(2년) 및 주택공급 신청 시 청약제한 기간(3개월) 폐지
- 인정주택 가점제 청약 시 주택세대 감점제도 폐지 :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가점 폐지
- 소형 지가주택 기준 완화 : 7천 원/㎡ 이하 → 공시가격 7천원의 이하(이에 → 10배이하) +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

*청가 1세대 외 지역에 시행은 2026.12.02.(수) 이후 해당 주택에 중하시기 바라며, 이속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■ 당 이해는 인정주택에서 **가점제 청약제도** 적용되며, 청약가점는 소속청약자에 **가점이 가장 높은 청약자**에 **당첨자를 선정하는 "청약가점제"가 적용됨**

■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기도 용인시)은 주택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임.

■ 본 이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.2.순위 및 기준 7.2.순위 및 기준 1.2.순위 및 기준 7.2.순위 등 **주택청약 제도 변경**에 따라 **청약 조건 변경**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자격 :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"무주택 세대주만 인정 받던 것"에서 "무주택 세대주상태로 청약 신청 가능(세대원에 청약한 청약자는 가능)"으로 완화됨.
- 인정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"무주택 세대주만 인정 받던 것"에서 "무주택 세대주상태로 청약 신청 가능(세대원에 청약한 청약자는 가능)"으로 완화됨.
- 인주자에는 해외체류 변경 기간 등, 제한 완화 : 해외체류 이후에 청약신청 가능 기간 : 국내거주변경 기간(2년) 및 주택공급 신청 시 청약제한 기간(3개월) 폐지
- 인정주택 가점제 청약 시 주택세대 감점제도 폐지 :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가점 폐지
- 소형 지가주택 기준 완화 : 7천 원/㎡ 이하 → 공시가격 7천원의 이하(이에 → 10배이하) +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

*청가 1세대 외 지역에 시행은 2026.12.02.(수) 이후 해당 주택에 중하시기 바라며, 이속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■ 본 이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.2.순위 및 기준 7.2.순위 등 **주택청약 제도 변경**에 따라 **청약 조건 변경**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소형 지가주택 기준 : 7천 원/㎡ 이하 +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(이에 → 10배이하) +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이내 변경

*청가 1세대 외 지역에 시행은 2026.12.02.(수) 이후 해당 주택에 중하시기 바라며, 이속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■ 당 이해는 인정주택에서 **가점제 청약**에 **당첨자를 선정하는 "청약가점제"가 적용됨**

■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기도 용인시)은 주택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임.

■ 본 이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.2.순위 및 기준 7.2.순위 등 **주택청약 제도 변경**에 따라 **청약 조건 변경**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소형 지가주택 기준 : 7천 원/㎡ 이하 +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(이에 → 10배이하) +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이내 변경

*청가 1세대 외 지역에 시행은 2026.12.02.(수) 이후 해당 주택에 중하시기 바라며, 이속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■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: 2026.1.29.(목) 이후 지정 시 공시가격 7천만원 이상(이에 → 10배이상) +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상, 비수도권 8천만원 이상 이내 변경

- 소형 지가주택 기준 : 7천 원/㎡ 이하 + 공시가격 7천만원 이상(이에 → 10배이상) +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상, 비수도권 8천만원 이상 이내 변경

*청가 1세대 외 지역에 시행은 2026.12.02.(수) 이후 해당 주택에 중하시기 바라며, 이속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일반공급자/기이전세대자/면세자	–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	– 사업자등록증	세무서
기이전세대 중 소득세 미신고자	– 기이전세대 사업자등록증		세무서
자영업자	신규사업자	–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부분)	– 사업자등록증	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
	법인사업자	–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	법인등기부등본	세무서
보험료납입증명문제한	–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	–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	세무서,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– 수급자 증명서		동사무소
비상공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	– 계약기간 및 종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명세명세표(직인 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제작(1 날인)		직장
무지자	– 비사업자 확인서		접수장소

※ 기타 관련사항은 "신문무무 주택 특별공급 운영방침에 따름.

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: 전체 공급세대수의 3% 이내)
  - 신청자격
    - 대상자 : "주택공급에관한법률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9.02) 현재 수도권내 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연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기간이 3년 이내이고, 그 기간에 입신 중인가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년이내에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공단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)한 자로서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